



[ 2019. 8. 13.] [ 2019 - 136 , 2019. 8. 13., ]

( ), 044 - 200 - 5839

1 ( ) 「 」 22 1  
. <2013. 4. 16.>

2 ( ) 「 」 ( " " ) 22 1  
1 . <2013. 4. 16.>

1 ( " )  
" ) . , 가  
. <2013. 4. 16.>

1. 2
2. 「 」 ( " " )  
" )

2008. 7. 18., 2013. 5. 7., 2017. 01. 23

가.

.  
.

3. <2013. 4. 16.>

4. 2

3 ( ) 22 1  
26 , 「 」 (

" " ) .  
1 (KS), (ISO)

1. 26

2.

3.

( ) 「 」 ( " " ) 42 2 2 1

. < 2017. 01. 23.>

---

4 ( )

1.

40

( " "

)

가

.<2013. 4. 16.>

2.

5 ( )

「 .

」

2020 1 1

3

( 3 12 31

)

< 2013 - 51 ,2013.5.7.>

< 2014 - 125 ,2014.11.20.>

< 2014 - 154 ,2014.12.24.>

1 ( )

2 3

4 ( ) 1 7

「

」

1 5

“ ” “ ”

9

< 2017 - 12 ,2017.1.23.>

< 2019 - 136 ,2019.8.13.>

[별표 1]

예비검사의 대상(제2조 관련)

1. 선체에 관한 것

- 가.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 나. 소형선박의 선체
- 다. 선미골재
- 라. 타
- 마. 타두재
- 바. 타심재
- 사. 화물탱크
- 아. 선체블록 기타 선체구조부재
- 자. 강제창구덮개
- 차. 목제창구덮개
- 카. 창구복포
- 타. 수밀폐쇄장치

2. 기관에 관한 것 <개정 2014.11.20>

- 가. 내연기관 또는 「선박기관기준」 별표 1에 따라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
  - 나. 가스터빈
  - 다. 선내외기
  - 라. 선외기
  - 마. 보일러 또는 그 중요부품
  - 바.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중요부품
  - 사. 압력용기
  - 아. 열교환기
  - 자.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 차.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 카. 축계의 클러치·역전기·유체커플링·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 타.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선미관 실(seal)장치
- 파.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 하. 아웃드라이버장치

- 
- 거. 리더프로펠러장치
  - 너. 워터젯트추진장치
  - 더. 액량계측장치
  - 러. 유량계
  - 머. 유가열기
  - 버. 원격제어장치
  - 서.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
  - 어. 펌프류
  - 저. 밸브류
  - 처.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
3. 배수설비에 관한 것
- 가. 빌지펌프
  - 나. 선외펌프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 가. 유압조타장치
  - 나. 닳
  - 다. 쇠사슬
  - 라. 로프
  - 마. 유압펌프
  - 바. 유압모터
  - 사. 양묘장치
  - 아. 계선장치
  - 자. 비상예인장치
5. 구명설비에 관한 것
- 가. 구명정
  - 나. 구조정
  - 다. 구명뗏목지원정
  - 라.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 마.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 바. 구명뗏목
  - 사. 진수장치
  - 아. 탑승장치
  - 자. 보트대빛
  - 차. 보트원치
  - 카. 구명부기
  - 타.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

파. 구명조끼

하.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거. 방수복

너. 보온구

더. 로켓낙하산신호·신호홍염·발연부신호·자기발연신호

러. 자기점화등

머. 탐조등

버. 구명조끼표시등

서. 캐노피등

어. 수밀전기등

저. 구난식량·식수

쳐. 해수탈염장치

커.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터. 수압이탈장치

퍼. 위크링크

허. 레이더반사기

고. 역반사재

노. 노출보호복

6. 소방설비에 관한 것

가. 소화펌프

나. 소화기(휴대식 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다.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스프링클러헤드·매니폴드·모니터·혼합기·밸브류·관류)

라. 소화제

마. 소화호스·노즐

바. 소방원장구(개인장구·호흡구)

사. 물분무방사기

아. 국제육상시설연결구

자. 화재탐지장치(탐지기·제어반·표시반·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차.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표시반 및 제어반)

카. 가연성가스검정기

타. 방화용재료

파. 방화문

하. 자동폐쇄형방화담퍼

거. 고속배기장치

너. 플레임어레스트

---

7. 거주설비에 관한 것

- 가. 기계식통풍장치
- 나. 현창(한국산업규격 C급 이하 제외)
- 다. 비상표시등·탈출유도등
- 라. 비상조명장치
- 마. 공기식매트리스 <개정 2009.8.24>

8. 항해용구에 관한 것

- 가.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 나. 음향신호장치(기적·호종·동라 등)
- 다. 자기컴파스
- 라. 자이로컴파스
- 마. 음향측심기
- 바. 선속거리계
- 사. 회두각속도계
- 아. 도선사용사다리
- 자. 엔진텔레그라프
- 차. 재화문개폐표시장치
- 카. 누수검지장치
- 타. 홀수계측장치
- 파.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개정 2009.8.24>

9.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 가. 크레인
- 나.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봄·윈치·와이어로프·블록·구즈넥(Goose Neck 브래킷)]

10. 전기설비에 관한 것

- 가.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 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 다.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 라.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 마.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 바.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 사. 주파수변환장치
- 아. 선박용전선

11. 기타

- 가. 잠수설비의 내압동체

- 
- 나.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 다. 컨테이너
  - 라.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압력용기·열교환기·안전밸브
12.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에 따라 시설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개정 2008.7.18> <개정 2013.5.7>

**[별표 2]**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용물건등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선박용물건등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원동기 공기압축기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 프로펠러 관류(플렉시블호스 포함) 펌프류 밸브류 쇠사슬	22kW (30PS) 미만의 것 수동식의 것 직경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삭제> <삭제> 직경 700밀리미터미만의 것 1류관용외의 것 수동식의 것 안전밸브·선체붙이밸브 및 1류관용외의 것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이상의 것외의 것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외의 것 (1) 지름 1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2) 지름 2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외의 로프
현창 발전기	한국산업규격 C급 이하의 것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외의 것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하역장치 냉동설비 (냉매압축기·압력용기·열교환기·안전밸브)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사용동력이 7.5kW (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